

## 2022년 (재)안산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 □ 감사실시 결과

- 대상기관 : (재)안산문화재단
- 감사기간 : 2022. 8. 22.(월) ~ 9. 2.(금) [10일간]
- 감사범위 : 2018. 10. 1. ~ 2022. 6. 30.까지 기관운영 전반
- 감사인원 : 감사관 외 6명
- 감사결과 : 지적사항 30건(신분상 31명/15건, 재정상 12,277천원/6건)

(단위 : 건, 건/명, 천원)

합계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처분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중징계	경징계	소계	환수	환급	기타	경고	훈계	주의				
44	31	12,277 (시정완료 환급10,180 환수13포함)	-	-	9 (2,084)	5 (2,084)	-	4	4 (기관)	12 (26)	12 (5)	3	4	2 (시정 완료1)	-

※ 안산시 문화예술과 처분요구(주의 1건, 신분상조치 없음) 포함



# 2022년 (재)안산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 (재)안산문화재단의 주요기능, 사무 및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대안을 제시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종합감사를 실시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개요

- 대상기관 : (재)안산문화재단
- 감사기간 : 2022. 8. 22.(월) ~ 9. 2.(금) [10일간]
  - ※ 예비조사 기간 : 2022. 8. 17.(수) ~ 8. 19.(금) [3일간]
- 감사범위 : 2018. 10. 1. ~ 2022. 6. 30.까지 기관운영 전반
- 감사인원 : 감사관 외 6명
- 감 사 장 : (재)안산문화재단 회의실(1층)
- 감사종류 : 종합감사(실지감사)

#### ◆ 감사중점

- 이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동일한 지적사례 발생 여부
-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업무 등 회계처리 이행실태 점검
- 직원 복무관리 및 행정일반 등에 관한 사항
- 취약업무 및 반복적·관행적 업무추진 행태 집중 점검
- 자산 및 시설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산문화재단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 감사실시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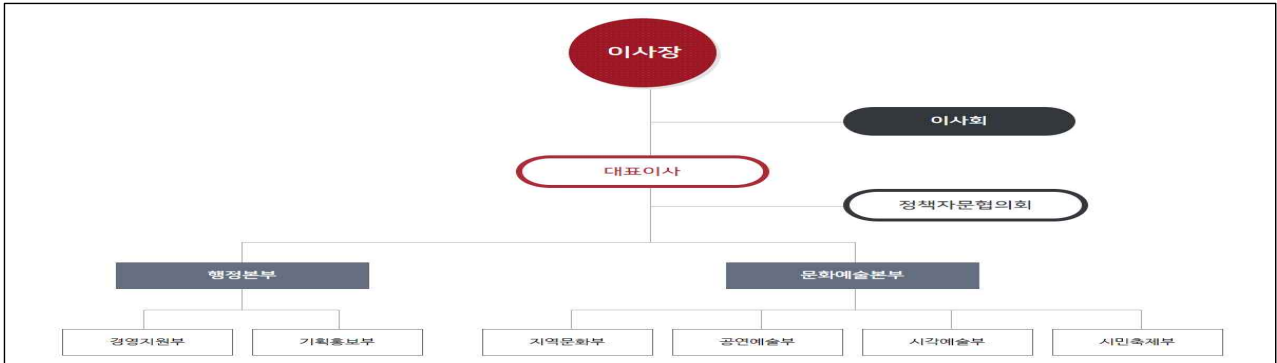
- 종합감사 실시 알림 : 2022. 07. 25.
- 종합감사 마감회의 : 2022. 09. 02.
  - ▶ 일시/장소 : '22.09.02. 16:00 ~ 16:30 /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실
  - ▶ 참 석 자 : 10명(감사관 2, 안산문화재단 8)
  - ▶ 주요내용 : 확인사항 주요내용 전달, 향후 처리일정 및 소명절차 안내 등

##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 1 조직 및 정·현원

○ 조직도 : 2본부 6부



○ 정·현원 (2022.6.1.기준)

(단위 : 인)

구분	계	대표이사	본부장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고
정원	62	1	2	7	9	12	13	18	
현원	54	1	2	5	8	11	11	16	

### 2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경영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 복리후생, 회계관리, 교육훈련, 이사회 운영</li> <li>○ 자산관리, 시설관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문화광장, 아뜨시끌)</li> <li>○ 대관관리(안산문화광장, 아뜨시끌), 후원회 운영</li> <li>○ 홈페이지 운영, 전산 및 통신 관리</li> </ul>
기획홍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책조사 및 연구,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연차보고서 제작</li> <li>○ 사업실적관리, 경영평가, 예산편성, 제규정 관리, 대외협력업무</li> <li>○ 내·외부 감사, 청렴 및 윤리경영</li> <li>○ 재단종합홍보, 홍보매체운영, 언론홍보</li> </ul>
지역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문화정책사업, 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li> <li>○ 문화예술진흥 타 기관 공모지원사업 유치</li> <li>○ 공간활성화 사업 및 대관관리(화랑전시관, 국제회의장 등)</li> </ul>
공연예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공연 및 제작공연, 지역협업사업, 문화나눔 사업, 공연홍보</li> <li>○ 공연장 운영/대관(전당, 보노마루), 콜센터 운영</li> <li>○ 공연장 무대운영, 무대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점검관리</li> </ul>
시각예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기획, 단원 김홍도 콘텐츠 개발, 소장품 관리 등 김홍도미술관 운영</li> <li>○ 시각예술가 지원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li> <li>○ 단원미술제 운영(안산시 위탁사업)</li> <li>○ 대관관리(김홍도미술관)</li> </ul>
시민축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획 및 실행(안산시 위탁사업)</li> <li>○ 계절별 축제 운영, 축제 홍보</li> </ul>

### 3 예산규모

(단위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 예산	13,526,263	13,769,015	13,906,909	11,368,868	11,858,391	
출 연 금	9,050,000	9,250,000	9,380,000	8,473,000	8,973,000	
자체예산 등	2,926,263	2,969,015	2,968,909	2,100,868	2,150,391	
대행사업비	1,550,000	1,550,000	1,558,000	795,000	735,000	

### 4 주요시설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 설 명	규 모	시 설 명	규 모
해돋이(대극장)	1,573석(객석 3개층)	국제회의장	269석 (1층 200석, 2층 69석)
달맞이(중극장)	712석(객석 2개층)	야외공연장	1,000석
별무리(소극장)	140석(객석 1개층)	주 차 장	507대 (지하346, 지상161)
화랑미술관(전시동)	제1,2,3,4 전시관 (각 360㎡)	대지면적/연면적	78,484㎡ / 44,864㎡
기타시설	다목적홀, 예술교육실, 편의시설(식당, 매점, 아트샵) 등		

#### ○ 김홍도미술관

시 설 명	규 모	시 설 명	규 모
1전시관	1,204㎡	카페(임대)	108㎡
2전시관	598㎡	주 차 장	25대
상상미술공방	346㎡	대지면적/연면적	8,240㎡ / 2,258㎡
콘텐츠관	813.6㎡	2015.10.09. 개관 2016.02.17. 미술관 등록 2020.08.06. 명칭변경(단원미술관 → 김홍도미술관)	

#### ○ 안산문화광장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인수일자
안산문화광장	단원구 광덕대로 157 일원	광장:49,572㎡ 폭 56M, 길이 1,163M	2015.02.01.

#### ○ 소극장 보노마루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차장	인수일자
소극장 보노마루	상록구 본오로 182	918.3㎡ 203석	35대	2020.04.04.

#### ○ 아프시끌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인수일자
아프시끌 (한대앞역 자전거보관소)	상록구 이동 622-3	112.41㎡	2016.04.04.

\*공용(가설)건축물 이용 존치기간 : '24. 12. 25.

### III

## 감사결과

### 1 처분요구 총괄

○ 지적사항 : 총 30건(신분상 조치 31명/ 15건, 재정상 조치 12,277천원/ 6건)

(단위 : 건, 건/명, 천원)

합계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처분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중징계	경징계	소계	환수	환급	기타	경고	훈계	주의				
44	31	12,277 (시정완료 환급 10,180 환수 13포함)	-	-	9 (2,084)	5 (2,084)	-	4	4 (기관)	12 (26)	12 (5)	3	2	2 (시정 완료1)	-

※ 안산시 문화예술과 처분요구(주의 1건, 신분상조치 없음) 포함

### 2 감사총평

- 이번 감사는 안산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연한 (재)안산문화재단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사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예산편성·집행 및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취약업무 및 반복적·관행적 업무추진 행태를 집중점검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18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한 감사로 전회 감사 대비 총 지적건수(26건→30건)는 4건 증가한데 반해, 신분상 조치(0명 → 31명/15건), 재정상 조치(6,972천원→12,277천원)는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이전까지 자체감사가 계도, 경고(주의) 위주의 감사를 지향함으로써 일부 직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관행적 업무추진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숙지 부족 및 조직 내부의 감시 기능 및 자정능력 부재 등이 큰 요인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되는 내부 규정은 신속히 정비 하고, 담당업무별 사무편람(매뉴얼)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내 자체감사 기능 강화 및 주기적인 주무부서(안산시 문화예술과)의 지도·감독 등이 요구됨.

○ 주요 분야별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분야	지 적 사 항
인사·복무 (4건)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외부강의 등 신고 수행 절차 및 여비지급 부적정, 직원 출퇴근 및 병가 사용 등 복무 관리 소홀, 재택근무 복무관리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규정·규칙 (3건)	제규정 관리 소홀,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공인 관리·운영 부적정
예산집행 (7건)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예산 집행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관리 소홀, 가족수당 지급 소홀, 관내·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퇴직급여금 지급 소홀, 능률수당 지급률 재정비
계약 (3건)	공연동 ㉠㉠㉠㉠㉠ 설치 공사 등 계약 부적정,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재산관리 (7건)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대관 사용료 등 부과·징수 소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행보증채권 확보 소홀, 김홍도미술관 소장품 대여 관리 부적정, 김홍도미술관 정기대관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김홍도미술관 대관업무 부적정
주요사업 (5건)	단원미술제 운영 부적정, 전당 ㉠㉠㉠ 및 ㉠㉠㉠㉠ ㉠㉠㉠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2018 제작공연 뮤지컬 <㉠㉠㉠㉠ ㉠㉠> 공연계약 부적정, 축제사무국 예술감독 관련 업무 소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유료회원제 도입

### 3 개선할 과제

○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

- ▶ 재단의 조직은 2본부,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현원 54명(정원 62명)으로 부서별 평균 직원 수는 부서장을 포함한 8~9명으로 적정 배정 하여야 하나, 실제 부서별 직원 수는 큰 편차를 보임.

#### < 부서·직급별 현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기획홍보부	경영지원부	지역문화부	공연예술부	시각예술부	시민축제부	비고
계	52	5	10	5	22	7	3	
2급	6	-	2	1	1	1	1(市직원)	
3급	8	1	3	-	3	-	1	
4급	11	1	1	1	6	1	1	
5급	11	2	-	1	4	4	-	
6급	16	1	4	2	8	1	-	

※ 대표이사(임원) 1명, 본부장(1급) 2명 제외

- ▶ 본부장(1급)은 경력직 채용에 따른 임기(계약)직으로 중간관리자급인 팀장 직위가 없어 부서장의 업무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31건(훈계 26, 주의 5) 중 21건이 9명(2~4건/인)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인사·회계·계약·재산관리 등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함.

- ▶ 그에 반해 공연장·미술관·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문화부·공연예술부·시각예술부의 지적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부서원에 대한 부서장의 통솔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서로 다른 사업을 담당하더라도 추진과정이 유사하며, 전문 분야로써 부서원의 인사 이동이 비교적 적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단에서는 유사한 기능의 부서를 통합하여 부서 간 위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간관리자급인 팀장 직위를 신설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한 단계 보장하며, 정원 내 결원은 재단의 회계·계약 업무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 조직 내 업무처리 등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

- ▶ 재단의 자체감사 업무는 기획홍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서 내에는 예산 편성, 성과(평가)관리, 감사, 홍보 등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며,
- ▶ 감사담당자는 1명으로 감사 업무 외에 청렴 시책, 협약 체결 및 관리, 기념품 제작 및 관리, 홍보(광고 및 보도자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적인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재단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의 감사부서 또는 별도의 정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연기획 다변화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안산시의 문화공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다양한 예술·공연 작품 등을 기획 및 대관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 그러나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중공연, 뮤지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 등에 대한 관람인원은 저조한 편으로 이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규 작품 등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요구(needs)를 반영한 공연 등을 기획하고, 제작 공연의 경우, 타겟팅(targeting)을 통한 홍보 및 이벤트를 강화하여 관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실시간 대관 전산시스템 구축

- ▶ 공연장 및 전시관 등의 대관은 정기 또는 수시 접수로 이루어지며,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관 승인가부를 결정하고 있음.
- ▶ 수시 대관은 정기 대관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분기별 대관 취소 또는 공실 등을 파악하여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신청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통해 대관 승인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용 취소 또는 시급한 사용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움.

▶ 따라서 재단에서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수시 대관의 경우, 일반 행사목적의 대관 신청에 대하여는 실시간 대관이 가능하도록 대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고품격·양질의 공연 유치 및 제공을 위한 노후 시설 정비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안산시를 대표하는 공연장 및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의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획을 이어오고 있음.
- ▶ 그러나 공연 등에 필수적인 무대, 음향, 부대시설 등이 최근 공연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노후 시설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고품격·양질의 공연 유치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재단에서는 공연기획자,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안산시 문화예술과와의 긴밀한 협의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 안산시(주무부서)는 「지방출자출연법」 및 안산시 조례 등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전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산시 문화예술과 등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주요 지적사항

(NO. 10) 전당 ㉓㉓㉓ 및 ㉓㉓㉓㉓ ㉓㉓㉓㉓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간(㉓㉓㉓ 및 ㉓㉓㉓㉓) 재구성을 위해 “전당 ㉓㉓㉓ 및 ㉓㉓㉓㉓ 개선사업” 관련 설계용역 및 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 출연금 증액 목적사업인 문화공간 플랫폼 조성 사업과는 다르게 편의(임대)시설 및 지역예술인 사무실 설치 등의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디자인 컨설팅 용역 및 실시 설계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해 **,***천원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음.</li> <li>○ 또한, 디자인 컨설팅 용역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유용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li> <li>○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고, 예산을 목적 외로 유용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NO. 11) 2018 제작공연 뮤지컬 <㉓㉓㉓㉓ ㉓㉓> 공연계약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2018년 뮤지컬 &lt;㉓㉓㉓㉓ ㉓㉓&gt;를 신규 개발하여 공연을 추진하면서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부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출연료, 작품료, 스텝료, 무대장비료, 모든 형태의 저작권료 및 체재비, 제반경비 일체를 포함한 공연보상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티켓 판매 대행사와의 3자 계약을 통해 티켓판매대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공연 사업에 티켓판매대금의 20%(**,***천원)를 추가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공연을 위한 창작자 및 단체 등과의 공연계약 체결 시 사전에 계약 내용 및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부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li> <li>○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금의 일부를 지급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NO. 9)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2019년 미술관◆관(□□□관) 전시진열장 제작 설치 공고를 게시한 후 업종사항 제한 오류 표기로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할 경우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공고기간을 1일만 가산한 변경 공고를 시행함.</li> <li>○ 또한, ◆◆◆◆◆ ◆◆◆◆◆ 제작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간판에 해당하는 1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li> <li>○ 그리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함.</li> <li>○ 아울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계 및 준공계를 제출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계약부서는 발주부서를 경유(협조)한 완료계 및 감독조서를 제출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미징구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계약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li> <l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NO. 6) 공연동 ㉠㉠㉠㉠㉠ 설치 공사 등 계약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공연동 ㉠㉠㉠㉠㉠ 설치를 위해 “◆◆ ◆◆◆◆ ◆◆ 보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1천5백만원 이상인 공사를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 대가를 지급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처리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출이 증빙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비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li> <li>○ 부적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NO. 5) 외부강의 등 신고 수행 절차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임직원이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대표이사에게 사전 신고 하여야 하며, 출장명령을 받은 후에 출장하여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외부강의 신고 ♠♠♠건 중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이 아닌 부서장, 팀장 등에게 신고하였고, 강의 요청기관에서 실비(대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출장여비 ***,***원을 중복하여 지급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행동강령」 및 「여비규정」에 따라 착오 지급된 ♠건 ***,***원의 여비를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li> <li>○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의 신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NO. 8)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통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안)을 안산시에 공문으로 보내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채용 공고문(안)을 첨부하여 채용계획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서류 전형 평가 시 시험위원 중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켰어야 함에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심사함.</li> <li>○ 또한, ㉠㉠본부장을 공개채용하면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가 아닌 면접시험 최고득점자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이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방침결재를 받아 이사장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임직원의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li> <li>○ 직원 채용절차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NO. 14) 대관 사용료 등 부과·징수 소홀**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등 공연장의 대관 신청을 받아 사용을 승인하면서 대관 승인 통지 시 계약금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공연 진행 의사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대관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li> <li>○ 그 결과, 총 대관 승인 ◆◆◆건 중 ♣♣♣건이 계약금, 잔금 또는 부대설비 사용료 등의 납부가 지연 처리되었고, 그 중 ◆◆◆건은 대관일 이후에 납부 되었으며, 미납 ♣♣♣건에 대하여는 대관 신청 자격정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대관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함.</li> <li>○ 또한, 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대관 취소신청 시까지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 취소를 승인함으로써 재단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료의 징수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반대급부적으로 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취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등 대관 승인 취소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함.</li> </ul>
<p>처분 요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규정 및 대관 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여 공연장 대관 사용료 등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공연장 대관 접수·승인·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대관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b>“통보”</b></li> <li>○ 공연장 대관 사용료 등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훈계”</b> 요구</li> </ul>

**(NO. 17) 재택근무 복무관리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2021. 1. 4.부터 2021. 10. 1.까지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총 ◆◆명이 재택근무 변경신청에 대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재택근무일에 연장근무를 인정하여 총 ♣♣건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함.</li> </ul>
<p>처분 요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재택근무 및 시간외근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오 지급된 ♣♣건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환수하도록 <b>“시정”</b> 요구</li> </ul>

(NO. 27) 제규정 관리 소홀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단 사규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지침과 다른 조항이 있을 경우 내부절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함에도 「보수규정」 및 「회계규정」 등과 같이 상위 법률 및 조례 등의 규정을 사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상위지침과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재단 사규를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li> </ul>

(NO. 30) (재)안산문화재단 지도·감독 소홀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문화예술과는 (재)안산문화재단이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계획 사전 협의 시 채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용 공고문(안)만을 첨부하여 채용계획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없이 협의절차를 진행함.</li> <li>○ 또한, 2015. 9.25.자로 「보수규정」의 수당지급기준표 개정 시 기말수당을 삭제하면서 운영수당을 능률수당으로 변경하고, 기존 기말수당이 재단 직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한 제수당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기말수당의 지급률을 능률수당의 지급률(월 기본급의 연 160%)에 그대로 포함하여 재단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연 400%(1~5급) 또는 월 기본급의 연 200%(6급)의 능률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총괄부서와의 협의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li> <li>○ 그리고 재단이 당초 출연금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을 협의 및 변경 승인 없이 추진하고, 예산을 낭비 또는 유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li> <li>○ 아울러 재단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및 관련 조례 등을 준수하여 “2022년 (재)안산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li> </ul>

## 5 기타 지적사항

(NO. 1)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4대의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유류수불대장 등을 작성 및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차량 내 부착된 하이패스는 공적인 업무수행에만 사용해야 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사전에 출장 명령을 받는 등 이행절차 진행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사전에 출장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음.</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b>“기관경고”</b></li> <li>○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훈계”</b> 요구</li> </ul>
(NO. 2) 2018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20♠♠년 제♣♣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해외워크숍을 추진 하면서 재단의 임직원의 국외출장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국외출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직원 ●인에게 국외출장여비 중 일비만을 지급하고 항공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선정작가들의 국외출장비용이 포함된 사업비에 합산하여 용역시행사에 지급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b>“기관경고”</b></li> <li>○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관련자에게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훈계”</b> 요구</li> </ul>
(NO. 3) 단원미술제 운영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단원미술제 개최와 관련하여 「단원미술제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전문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전문위원 및 심사위원 외에 근거 규정 없는 감수위원을 위촉하여 심사과정에 참여 시키고 수당을 지급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미술제 운영규칙」에 명시된 운영위원장, 부분별 전문위원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 근거 규정에 없는 자를 임의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b>“기관경고”</b></li> <li>○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추진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주의”</b> 요구</li> </ul>

**(NO. 4) 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사유(목적), 집행대상, 집행방법 등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집행대상 유관 기관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는 언론사 대표를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명절선물을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li> <li>○ 또한, 담당자의 업무 과실로 과태료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귀책이 있는 담당자가 개인 부담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공공요금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이 담당자의 과실임에도 지급수수료(행정소송비용)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b>“기관경고”</b></li> <li>○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원과 가산세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원을 환수하도록 <b>“시정”</b> 요구</li> </ul>

**(NO. 7)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격년 주기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영지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격년 주기로 하여야 하는 20◆◆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b>“시정”</b> 요구</li> <li>○ 「2018년 안산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로 지적되었음에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훈계”</b> 요구</li> </ul>

**(NO. 1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재단 ██████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업체와 협상의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시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재단 직원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총 7명의 평가위원 중 내부직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예비명부를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예비명부 대상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함.</li> <li>○ 또한, 2021년도 안산문화재단 ██████ 콘텐츠 제작·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절차를 명시하였음에도 1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주의” 요구</li> <li>○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법령 위배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b>(NO. 13) 지출증빙서류 관리 소홀</b>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지출결의서 및 원본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2020년 지출 증빙서류 ♠권을 분실하는 등 지출증빙서류 관리를 소홀히 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지출증빙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li> <li>○ 5년간 지출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출증빙서류를 분실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요구</li> </ul>
<b>(NO. 15) 가족수당 지급 소홀</b>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보수 지급 시 부양가족이 있는 52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2021. 1. 1.부터 가족수당 지급 금액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 방지를 이유로 개정 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총 ♣♣건에 대해 총 **,***천원을 과소 지급함.</li> <li>○ 또한, 부양가족을 추가하면서 일할계산을 미적용하여 총 **,***원(◆건)을 과다지급 하였고, 배우자 추가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제출받아야 하나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제출받았으며(♠건), 복직을 하면서 변동사항을 기재한 부양가족신고서에 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건).</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 지급된 가족수당 총 **,***천원을 3회에 걸쳐 전액 환급처리 하였고,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총 **,***원을 전액 환수처리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방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b>통보</b>”</li> <li>○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주의</b>” 요구</li> </ul>
----------------	--

**(NO. 16) 직원 출퇴근 및 병가 사용 등 복무 관리 소홀**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현원 54명 중 지각 및 출퇴근 미등록자가 총 ◆◆명(♠♠♠건) 이고, 월 3회 이상 지각 및 출근 미등록자가 총 ◆◆명(◇◇건)에 이르는데도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함.</li> <li>○ 또한, 병가신청자는 6일 초과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병가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나, 직원 ♣♣명(♣♣건)에 대하여 병가일수가 7일 이상임에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을 승인함.</li> </ul>
----------------	---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퇴근 시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등록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b>주의</b>” 요구</li> <li>○ 복무 등을 소홀히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b>주의</b>” 요구</li> </ul>
----------------	---

**(NO. 18) 관내·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출장을 실시한 임직원에게 사규 「복무규정」 및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일비 및 식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총 ♠♠건(***,***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함.</li> </ul>
----------------	--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오 지급된 ♠♠건 ***,***원의 여비를 환수하도록 “<b>시정</b>” 요구</li> </ul>
----------------	---

**(NO. 19)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행보증채권 확보 소홀**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임대시설(일반음식점)을 「공유 재산법」에 따라 일반입찰 최종낙찰자와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허가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에게 사용허가기간 중 1차년도 및 2차 년도에 연 4회 분할납부를 하게 하면서 분할납부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는 등 이행보증채권 확보를 소홀히 함.</li> </ul>
----------------	---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도록 “<b>시정</b>” 요구</li> </ul>
----------------	---

**(NO. 20) 소장품 대여 관리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 (재)안산문화재단은 총 ◆◆개의 소장작품을 대여하면서 1점을 제외한 ♣♣점의 작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대여기간을 연장하였고, 이 중 ◇점은 대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납, ♠점은 대여기간 종료일이 1년이 경과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대여기간을 연장, ♠점은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반납 받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 현재까지 미반납된 소장작품 ♠점을 반납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시정” 요구

**(NO. 21) 공인 관리·운영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 (재)안산문화재단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 직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부서명이 불일치하는 다른 규정 및 규칙의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2020.11.5. 직제개편으로 행정지원부가 경영지원부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공인규정」에는 직제 변경 전 부서명인 행정지원부로 명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함.
- 또한, 공인 관수자는 경영지원부장으로 지정해야 하며, 경영지원부장은 공인대장 작성 및 공인 신조·개각 또는 폐기, 인영부 보존 등 공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공인 관수자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담당은 ◎급 ⅢⅢⅢⅢ 주임으로 업무분장 되어 있고 2015년부터 공인에 관련한 업무를 경영지원부장이 아닌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처분  
요구  
사항

-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공인규정」을 개정하고, 공인 관수자는 경영지원부장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NO. 22) 퇴직급여금 지급 소홀**

위법  
부당  
내용

- (재)안산문화재단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 재단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2021년 ♣♣건, 2022년 ♠♠건에 대해 퇴직급여금의 지급기한을 지연하여 지급함.

처분  
요구  
사항

- 퇴직급여금 지급 시 지급기한을 지연하지 않는 등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NO. 23) 정기대관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 정기대관 심의를 위하여 2명 이상의 재단 직원과 3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2022년 ㉹㉹㉹㉹㉹㉹ 정기대관 심의를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실시하는 등 ㉹㉹㉹㉹㉹㉹ 정기대관심의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함.</li> </ul>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정기·수시대관 시 「단원미술관 대관규칙」을 준수하여 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관업무를 수행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li> </ul>

**(NO. 24) ㉹㉹㉹㉹㉹㉹ 대관업무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 정기대관 신청서를 접수받고 30일 이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된 건에 대하여 가부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2020년 하반기 ㉹㉹㉹㉹㉹㉹ 정기대관 신청 총 ◆건 중 ◇건에 대하여는 대관승인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대관이 취소된 ♣건 중 ♠건에 대하여는 변경/취소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음.</li> <li>○ 또한, 대관 사용료는 대관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에는 전시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022년 정기대관 ◆건 중 ◇건에 대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대관료를 받음.</li> </ul>
----------------	---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 절차 및 사용료 징수 업무 수행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li> </ul>
----------------	--

**(NO. 25) 축제사무국 예술감독 관련 업무 소홀**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안산㉹㉹㉹㉹㉹㉹ 예술감독을 채용할 때 채용자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하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불어) 가능자 및 국제교류 업무 경력자” 등과 같은 모호한 채용자격기준을 근거로 예술감독을 채용함.</li> <li>○ 또한, 전문가 자문료 산정 시에는 채용 시 전문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술감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 등의 확인 절차 없이 계약기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함.</li> </ul>
----------------	--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감독 채용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li> </ul>
----------------	--

**(NO. 26)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연장 대관 규칙」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간 등의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에도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li> <li>○ 또한,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참석수당은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각종회의 중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는 수당(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종심사 시에 해당하는 수당(200,000원)을 적용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함.</li> </ul>
<p>처분 요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연장 대관 규칙」 제9조를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li> <li>○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위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검토를 “권고”</li> </ul>

**(NO. 28)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유료회원제 도입**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현재 시행 중인 무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유료회원제를 도입하고, 유료회원들에게 선예매 서비스, 입점 매장 할인, 굿즈 증정 등 무료회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연 및 전시 이용자들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재단 수익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li> </ul>
<p>처분 요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공연 프로그램 확정에 맞추어 유료회원제 도입 시기 및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 요구</li> </ul>

**(NO. 29) 능률수당 지급률 재정비**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에서 실시한 「2014년 산하기관 특별감사」결과, 개선 요구에 따라 2015. 9.25.자로 「보수규정」의 수당지급기준표 개정 시기말수당이 이미 포함된 기본급을 받고 있음에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기말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수당을 능률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급률은 운영수당의 지급률인 월 기본급의 240%로 유지했어야 함에도 기존 기말수당은 민간신분인 재단 직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한 제수당이라는 이유를 들어 삭제된 기말수당의 지급률(연 160%)를 능률수당의 지급률에 그대로 포함시켰고, 현재까지 재단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연 400%(1~5급) 또는 연 200%(6급)의 지급률로 능률수당을 지급하고 있음.</li> </ul>
<p>처분 요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률수당의 지급률을 재검토하여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li> </ul>